

2024년도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8.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4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2,579건(5,259개 게시물, 안건번호 제2024-28049호~3062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8049호~28125호(순번 1번~77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8126호~28130호(순번 78번~82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8131호~제2024-28148호(순번 83번~100번)는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28149호~제2024-30627호(순번 101번~2579번)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4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259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2,579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7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 '☆☆', '★★★',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100개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8번~8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5개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83번~100번은 민원인

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및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 15건, 웹하드에 출판 불법복제물 3건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54개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01번~257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영상,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며 총 5,100개의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시연하면서) 본 기기를 화면으로 연결하게 되면, 전세계에서 방송중인 TV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음. 또한 넷플릭스처럼 영화, 영상물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VOD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기기 자체에는 캘린더, 계산기 등의 다른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으나, 대부분 불법 콘텐츠 이용에 사용되고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셋톱박스 판매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지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셋톱박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가처분이 있었음.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 모양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셋톱박스는 아
니나 불법적인 전송의 방법으로 TV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이 있었음.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라는 판결이 있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당 기기만으로는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며, 스트리밍 서버에 연결이 되어야 함. 스트리밍 서버는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속도에 따라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로도 받게 됨. 일반적으로 서버 IP 2년정도 유지되며, IP가 없어지는 경우 해당 기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판매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임.
- 박현주 전문위원: 최초 판매 단계에서부터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까지 사전에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C 위원: 통관 쪽에서 할 수 있는 침해 대응 조치는 없는지 질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당 기기가 수입될 때 ‘○○○○○○’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들어옴. 즉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불법스트리밍 기계로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7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78번~82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 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8번~8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83번~100번은 블로그 및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 15건, 웹하드에 출판 불법복제물로 게시물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3번~10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01번~257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2,479건임. 총 게시물 수는 5,10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소프트웨어,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방송 '피지컬:100 언더그라운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57번은 웹하드에서 총 9부작으로 제작된 방송 '피지컬:100 언더그라운드'의 7편 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피지컬:100 언더그라운드'는 2024. 3. 19.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국내 예능프로그램임.

(만화 '처음, 시작했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83번은 웹하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를 유료로 판매중인 사안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는 2024. 2. 23 e-book 출간되었으며, 예스24 등 사이트에서 3,500원에 판매중임.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AutoCAD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46번은 웹하드에서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AutoCAD 2022'를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프로그램은 어도비공식홈페이지에서 월 320,180원에 판매중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01번~257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

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1번~257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8049호~30627호(순번 1번~2579번)는 불법복제 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15.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오영주

 위원 최태경

 위원 홍승기